

디지털 성범죄 불법 합성 및 유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학교 안내 협조 요청

(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)

□ 개요

- 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 및 예방 교육 안내·협조 필요

□ 안내 사항

① 디지털 성범죄 사례

- (판매자 검거) 부산남부경찰서에서는 디스코드 '산OO' 채널을 개설, 회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,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을 판매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청소년 A군을 검거
 - * 디스코드 : 음성, 채팅, 영상 공유, 화상 통화 등을 지원하는 메신저
- (유입경로) ① X(구, 트위터), ② 텔레그램, ③ 다른 디스코드 채널, ④ 구글 검색 등을 통해 다수의 청소년 구매자 해당 채널 입장

②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 요령

-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신고 방법 및 피해자 대상 상담, 법·의료지원, 자료삭제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 안내
 - ※ (피해신고) 긴급신고 112, 방송통신위원회 1377
 - (상담·지원)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-735-8994, 여성긴급전화 1366

□ 협조 요청

-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 관련 예방교육 시 해당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 협조 요청 (붙임 자료 참조)
 - * 게시판 등을 통한 교육자료, 카드뉴스 등 배포
 - ※ 동 안내자료는 예시(안)이며, 학교에서 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되, 특히 모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수정·활용

디지털 성범죄(불법 합성 및 유포) 대응 및 예방 협조 요청

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‘딥페이크’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. 디지털 성범죄(불법합성 및 유포) 언론 내용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에서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

□ **디지털 성범죄 사례**

<p><사례 1></p>	<p>학생 A군은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하였다고 진술</p>
<p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)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</p>	
<p><사례 2></p>	<p>학생 C군은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,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</p>
<p>특히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아동·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,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아동·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.</p>	
<p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)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</p>	
<p><사례 3></p>	<p>학생 P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(이른바 유포물)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진첩에 동영상 내려받았다고 진술</p>
<p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·유포협박·저장·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.</p>	
<p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</p>	

□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

☞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?

디지털 성범죄

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·유포협박·소지·시청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

SNS·오픈채팅방·만남어플 등 온라인상에서 친밀해진 상태에서 신상정보, 신체 사진 등을 요구, 이후 태도를 바꾸어 신상정보·사진 유포 및 게시 등 협박하여 추가로 범행

불법합성물 제작·배포
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제작·소지·유포

불법촬영물 소지·시청

동의없이 사진·동영상 촬영하거나 유포

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

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이거나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, 유포 협박을 받을 때 즉시 112 신고하세요!

* 경찰청-교육부, 캠퍼스 안심 소식지('22.10월) 자료 발취

사진·동영상 불법 촬영·유포

뒷모습, 전신, 얼굴, 특정 신체부위 등 촬영, 유포

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·소지·유포

웹하드, 인터넷 사이트, SNS 등에 업로드, 단독방에 유포, 시청

유포 협박

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,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, 유포 협박을 빌미로 금전 요구 등

불법합성물 제작·배포

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(소위 지인 능욕)

☞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,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이렇게 행동해요

만남 요구

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
☞ **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**

랜덤채팅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
☞ **응하지 않고 캡처해서 신고하기**

불법촬영 합성영상 유포

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
☞ **즉시 112 신고하기**

불법촬영이 의심될 때
☞ **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**

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
☞ **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**

지인이 합성된 사진·영상을 봤을 때
☞ **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**

성적 문자 영상 전송

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
☞ **불쾌함 표현하기 / 대화 중단·신고하기**

성적인 욕설, 몸 사진·영상을 받았을 때
☞ **대화 중단·신고하기**

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
☞ **'신고 / 스텝' 누르기 /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**

몸 사진전송을 요구받았을 때
☞ **절대 응하지 않기 / 대화 중단하기**

* 경찰청 사이버폭력예방 카드뉴스('20) 자료 발취

도움을 요청해요

▶ **긴급신고 112**

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
safe182.go.kr

피해 신고

▶ **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없이 1377→3번**
www.kocsc.or.kr 디지털성범죄 신고

방통심의위
디지털성범죄정보
신고상담톡

피해 상담

▶ **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(한국여성인권진흥원)**
☎ 02-735-8994 / <http://d4u.stop.or.kr>

▶ **여성긴급전화 1366** ☎ 국번없이 1366